1가구 2주택자 집 팔 때 양도세 50% 중과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세제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내년부터 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휴양업·스키장업·대중골프장업·유통단지·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자도 특별히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자도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노동·과학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직선제=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행사처벌을 받는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노동·과학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직선제=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행사처벌을 받는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내년 3월23일부터 학원·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내년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 안전테스트 목록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된다.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 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내년 7월1일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증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5일 근무제 정착 지원=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융자지원 규모가 1천억원 증가한 3천억원으